

## 전자등록업규정 (개정)

### 1 요청사유 (공정시장과, 2023.3.21.)

- (개정 내용)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·제19조의2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
  - 이는 행정규제, 훈령 예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,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,
  - 위 규정 개정의 사전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

### 2 검토 내용

- 동 개정내용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, 입법내용의 성질상 사전예고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- ※ ‘금융위 법제업무 운영규정’ 제20조 등에 따라 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 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·단축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### 3 처리 의견

- 사전예고 기간 : '23.3.21일~4.10일 (20일간)